

의안번호	2206474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4. 12. 24.
추계번호	24C594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 적 검사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 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 적 검사 등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¹⁾의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
가재정소요 발생이 가능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중문
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
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 10. (생략)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지원 관련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표]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상 지원 사업

□ 대중문화예술인 현황

○ '22년 종사자 수: 대중문화예술인* 11,355명 (연습생 1,170명 포함)

* 가수(보컬, 댄스 등) 4,452명(39.2%), 연기자 4,451명(39.2%), 방송인 1,302명(11.5%), 기타(모델, 뮤지컬배우, 성우, MC, 댄서 등) 1,150명(10.1%)

□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보조사업자
	2024년 기준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393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중심의 대중문화 예술공연 지역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182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과 종사자 발굴, 시상식 개최	
대중문화예술제작 제작스태프 대상	200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제작스태프 발굴, 시상식 개최	
대중문화예술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84	대중문화예술인, 제작스태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1,50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 운영, 종사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정책연구, 연예인·연습생 심리상담 및 소양교육	

□ 참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지원 사업

○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소양교육(내내역사업명: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 목적: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소양 확립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
- 대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연예인·연습생
- 교육내용: 성 윤리의식, 자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절, 인문사회교육 등
- 실시규모: 270회 내외(교육인원 약 1,600명)
- 교육방식: 강사(대학교수, 소통 전문가 등) 방문교육
- 교육시간: 프로그램당 2시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 및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지원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향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 및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에 대한 지원 기준·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